

[별표1]

**수강료 등 반환기준(제6조제5항 관련)**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자치회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		강좌를 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강좌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개강일 이후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	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총 강좌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강좌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강좌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강좌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강좌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	강좌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강좌비등(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강좌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